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 December 2019, pp.4~17.*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우*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수료
이선복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akhw01@snu.ac.kr

국 문 초 록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수단이자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남한 사회에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 소재 문화유산 자체를 넘어 그것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법령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의 관리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법령만으로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 및 준수되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서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였던 탈북 인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 인력, 업무, 예산 등을 〈민족유산보호법〉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방의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나 업무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내용이 모호했던 일부 조항의 시행 양상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 문화유산의 열악한 관리 환경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및 역사유적에 한정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북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및 교차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북한, 문화유산관리, 민족유산보호법, 역사유적감독원, 인터뷰

투고일자 2019. 06. 28 ● **심사일자** 2019. 07. 22 ● **게재확정일자** 2019. 10. 22

Ⅰ. 서론

최근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문화유산[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교류 협력에 유용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거론되는 측면이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과거 한반도 남부지역의 문화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일수록 북한지역의 자료는 당시 사회의 변화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지고 있다.[2]

그러한 관심에도 남한 연구자들이 북한의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남한에서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알기조차 어려운 북한의 문화유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 관리, 보존, 복원되고 있는지, 즉 자료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문화유산의 이해와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즉 관련 규정에서부터 관리 업무의 일상까지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제 측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Ⅱ.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에 대한 접근 방법

1971년 남한의 문화재 관리 당국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남한에서 북한 소재 문화재를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 문화유산의 학술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3] 이후 남한에서는 북한 문화유산의 소개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연구는 주로 통일시대의 법령 체계 정비[4] 및 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조사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5] 남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극히 제한적임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는 문화유산 관리 법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6] 대체로 그러한 연구는 북한 문화유산 관리 법령 조문을 소개 및 분석하거나[7] 그것을 바탕으로 남한의 〈문화재보호

1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에 따르면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민족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으며, '문화유산'은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으로 구분된다(〈민족유산보호법〉 제2조; II장 참조). '민족유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은 실제로는 '문화유산'만을 규제하고 있고, '자연유산'은 별도의 법령에서 다루고 있음에 따라(〈민족유산보호법〉 제9조) 본 연구는 '자연유산'을 제외하고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의 현행 법령에 사용된 '민족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을 사용하였다.

2 이기성, 2015, 「북한 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 학사적 검토를 중심으로」『고고학』 14(3), p.6.
임상택, 2015, 「북한의 궁산문화 연구 과정과 편년 논리」『고고학』 14(3), p.34.
한창균, 2013, 「북한 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한국상고사학보』 79, p.182.

3 김이협, 1974, 「북한 유형문화재 지정의 제문제」『북한』 27, 북한연구소, pp.232~233.

4 김응환·전영선, 1997,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 :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민족학연구』 2, 한국민족학회, p.181.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송민선, 2017,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교류 협력 방안 연구」『문화재』 50(2), 국립문화재연구소.
오양열, 2003,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북한연구』 6,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전영선·신준영, 2016,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 협력』, 통일부 통일교육원.
정은찬·문철훈, 2017,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 협력 현황과 과제 : 문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 3(1),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정창현, 2019,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 교류」『통일인문학』 77,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하문식, 2007,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정신문화연구』 30(1), 한국학중앙연구원.

6 권혁희, 2019, 「북한의 비물질 문화유산 정책의 변화와 특성」『통일정책연구』 28(1), 통일연구원, p.210.

7 김용범·김응환·전영선·이승수, 1995,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 문화체육부.
김응환·전영선, 1997,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 :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민족학연구』 2, 한국민족학회.

법>과의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8]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법령의 특수성 및 이질성은 북한의 독특한 사회 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9]

이러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제도는 주로 교시와 명령을 통해 집행되다가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되며 법적으로 체계화되었다.[10] 이후 지속적인 제·개정을 거치며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법령은 조항이 추가 및 보완되었다. 이후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이, 2015년에는 현행 법령인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되었다(표 1). 외형상 문화유산 관리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문화유물'→'문화유산'→'민족유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관리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상이다(표 2). 다만 그러한 변화는 문화유산 관리의 강화라기보다는 북한의 통치 전략에 따라 문화유산 정책이 변화·정교화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11] 최신 연구에 의하면 2019년에 <민족유산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12]

표 1 역대 북한 문화유산 관리 법령[13]

제정 및 개정		법령
1994. 3. 24. 1999. 1. 21. 2009. 3. 31. 2011. 12. 2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5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	문화유물보호법
2012. 8. 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	문화유산보호법
2015. 6. 10. 20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28호 개정(내용 미상)	민족유산보호법

표 2 법령별 관리·보호 대상의 범위[14]

<table>
<tr><th colspan="5">문화유물보호법(1994)</th><th colspan="5">문화유산보호법(2012)</th><th colspan="4">민족유산보호법(2015)</th></tr>
<tr><td colspan="2">구분</td><td colspan="3">평가</td><td colspan="2">구분</td><td colspan="3">평가</td><td colspan="2">구분</td><td colspan="2">평가</td></tr>
<tr><td rowspan="2">문화유물</td><td>역사유적</td><td rowspan="2">국보</td><td rowspan="2">준국보</td><td rowspan="2">일반</td><td rowspan="2">물질
문화유산</td><td>역사유적</td><td colspan="2">국보</td><td>일반</td><td rowspan="2">물질유산</td><td>역사유적</td><td>국보</td><td>보존</td></tr>
<tr><td>역사유물</td><td colspan="2">국보</td><td>준국보</td><td>일반</td><td>역사유물</td><td>국보</td><td>준국보</td><td>일반</td></tr>
<tr><td colspan="5"></td><td colspan="2">비물질 문화유산</td><td colspan="2">국가</td><td>지방</td><td colspan="2">비물질유산</td><td colspan="2">국가</td><td>지방</td></tr>
<tr><td colspan="5"></td><td colspan="5"></td><td colspan="2">자연유산</td><td colspan="2">(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함)</td></tr>
</table>

김준혁, 2002, 「북한의 문화유산 인식과 정책」『민족발전연구』 6,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남궁승태, 2003, 「북한 문화유물보호법에 관한 고찰」『대불대학교 연구논문집』 2.
남보라·서순복, 2014,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 분석」『법학논총』 21(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상철·김창규, 1995, 『북한의 문화재 보호 관계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이호관, 1995, 「북한의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가?」『월간 문화예술』 19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장호수, 2000, 『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 관리』, 백산자료원.
지병목, 2003,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문화재』 36, 국립문화재연구소.

8 정재훈, 1989, 「남북한 문화재 관리정책의 비교」『미술사학』 3.
이규창, 2010, 「북한 문화재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북한 문화유물보호법과 남한 문화재보호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I)』, 법제처.
최종고, 1998,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 :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북한법연구』 1, 북한법연구회.

9 박상천, 1994, 「북한의 민족문화유산 계승 정책에 대한 고찰」『북한학보』 18.
전영선, 2006, 「북한의 민족문화정책과 민속문화」『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아카데미.

10 김응환·전영선, 1997, 앞의 글, p.189, pp.212~214.

11 권혁희, 2019, 앞의 글, p.216.

12 정창현, 2019, 앞의 글, p.372.

13 1994년의 <문화유물보호법>은 김용범 외 및 박상철·김창규의 책을(김용범 외, 1995, 앞의 책; 박상철·김창규, 1995, 앞의 책), 나머지 법령은 통일 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14 송민선, 2017, 앞의 글, p.98, <표 1>을 수정함.

법령 검토를 넘어서 문화유산 관리 실태에 대한 접근이 전혀 시도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연구들은 정보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우선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국보 지정과 같은 등록 문화유산에 주목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15] 해당 연구는 법령상의 문화유산 평가 및 지정 절차와 북한의 국보 및 준국보 유물의 등록 현황과 추이, 지정 내용, 관리기관 등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관과 조직 구성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도 있다. 정창현은 <문화유물보호법>을 기초로 여러 단편적인 정보를 취합하여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구성, 기능을 추론한 바 있다.[16]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기관, 조직, 수집과 평가, 등록, 복구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와 관리 실태 정황의 종합적 검토로서는 2007년에 발표된 하문식의 글을 들 수 있다.[17] 그는 연구소, 박물관, 학회, 대학 등의 문화유산 전문기관의 종류와 조직 구성, 인력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박물관 전시 실태, 유적의 원상복구, 문화재 도굴과 밀반출 등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상 허점과 문제를 지적하였다.

최근 주목되는 것은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18] 개성 만월대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짐에 따라 남한에서도 어느 정도 유적 관리 정황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데다 '개성역사유적지구'가 2013년 세계유산에 등재되며 당시의 <문화유물보호법>[19]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밀한 보존 관리 체계가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는 <문화유물보호법>과 그 <시행규칙>[20]을 근거로 문화보존지도국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변 완충지대는 <환경보호법>, <산림법>, <토지법>, <도시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개성역사유적지구 보호 및 관리 지침>이라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실제 관리는 다양한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개성시 문화유물보존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일반적인 문화유산 관리 상황에 이러한 세계유산 관리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위의 연구들은 매우 한정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법령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관리 체계와 실태에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이전의 <문화유물보호법>과 <문화유산보호법>이 시행되던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민족유산보호법> 제정 이후의 관리 체계와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족유산보호법> 이후 관리 체계의 세부적인 변화상보다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유산 대외교류 강화 기조의 의미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되었다.[21]

15 박대남, 2011, 「북한의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및 현황 고찰」『인문과학연구』 16,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14~123.

16 정창현, 2012, 「북한의 문화유산정책과 관리 체계」『통일인문학』 5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235~238.

17 하문식, 2007, 앞의 글, pp.283~295.

18 박성진, 2013,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현대북한연구』 16(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67~71.

19 2013년도는 <문화유물보호법>이 아닌 <문화유산보호법>이 시행되던 해이지만, UNESCO 홈페이지에서는 1994년의 <문화유물보호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차후 수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유물보호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20 <시행규칙>(2009)은 명칭만 확인될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1 정창현, 2019, 앞의 글, pp.376~382.
하문식, 2018,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 : 매장문화재」『선사와 고대』 57, pp.83~85.

게다가 문화유산 관리 법령의 존재와는 별도로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 양상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법령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 및 준수되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문헌 검토만으로는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심지어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에서도 문화유산 관리 법령과의 괴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22] <민족유산보호법>의 실제 적용 양상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현행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추론하고, 그 실제 적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지금으로서는 관리 실태를 전하는 북한 내부 문건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탈북 인사를 탐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간 인터뷰 조사가 전혀 시도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며, 관리 체계와 실태에 대해 유의미한 증언이 확보된 바 있다.[23] 그러한 증언 속에는 문화보존지도국→도 행정위원회 및 문화보존담당지도원→유적·유물관리소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나 강원도 문화재 관리인력이 총 17명이라는 등 관리 체계와 실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24] 그러나 해당 자료는 내용이 소략한데다 2000년대 초의 관리 정황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본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

<민족유산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성 산하[25] '민족유산보존위원회'에서 문화유산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 즉 '민족유산보호지도국'[26]이 실무를 담당한다(그림 1).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북한 내 문화유산의 수집, 평가, 등록, 관리, 이용 등의 계획 수립, 심사, 허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산하의 '민족유산보존사'는 문화유산 조사, 발굴, 복원 등과 관련한 사업과 연구를 수행한다.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민족유산보존사'의 기능과 편제는 남한의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대비된다.

북한의 문화유산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지도 하에 각지의 '민족유산보호기관' 및 각급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 의해 관리된다.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민족유산보호기관'은 기존 연구에서 각지의 유적관리소와 박물관으로 추정된 바 있다[27](표 3). 현재로서는 이러한 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에 기존 연구의 견해를 따라 유적관리소와 박물관을 '민족유산보호기관'으로 잠정 비정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함께 문화성 산하에 편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령상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박물관의 경우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방 행정기관과 중앙기관이 공동으로

22 박성진, 2013, 앞의 글, pp.72~80.

23 권오국, 2005, 「탈북 인사 대담 98 : 북한의 민속박물관」『통일한국』 264, 평화문제연구소.
권오국, 2006, 「탈북 인사 대담 110 : 북한의 문화재 실태」『통일한국』 276, 평화문제연구소.

24 위의 글, p.86.

25 <민족유산보호법> 상에서 '민족유산보존위원회',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문화성 산하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역사유적보호구역의 설치나 문화유산의 심의 결과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북한 기관별 인명록』에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문화성 산하 조직으로 기록되어 있다(통일부, 2018, 『2019 북한 기관별 인명록』, pp.91~94). 기존 연구에서도 문화성 산하 조직으로 기술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조직은 내각 문화성 산하에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6 <민족유산보호법>의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문화성 산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지칭한다(정창현, 2019, 앞의 글, pp.373~374).

27 정창현, 2012, 앞의 글, pp.235~238.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28] 현재까지 확인되는 북한의 유적관리소는 10곳에 불과하나 각 도에 1곳씩은 설치·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물관은 평양의 조선미술박물관 및 조선민속박물관을 제외하면 북한 전역에 11개소가 있다. 아마도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 이후 등록된 역사유적은 해당 지역의 유적관리소에서, 역사유물은 해당 지역의 박물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의가 보류된 미등록 문화유산의 경우에만 각 지방행정 단위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비물질 문화유산의 조사는 중앙기관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으나, 물질 문화유산의 발굴은 반드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상에서 발굴조사 수행을 위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남한에 알려진 북한의 발굴조사 기관으로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과, 그리고 각급 박물관이 있다.[29] 최근 북한의 문화유산 발굴조사 보도내용을 참고하면 조선중앙역사박물관,[30] 조선민족유산보존사,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 고려박물관,[31]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32] 등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다양한 기관이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남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개발구역에 대한 사전발굴조사의 의무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33] 건설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건설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발굴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굴조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림 2). 조사를 종료한 뒤에는 발굴보고서를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제출해야 하는 한편, 조사한 유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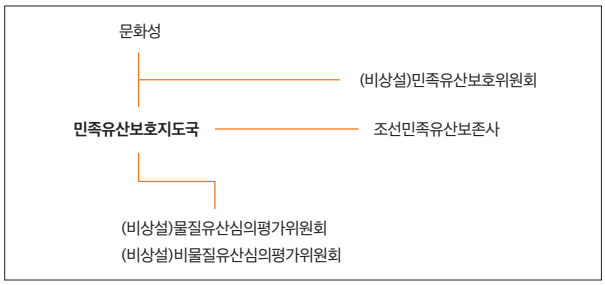


그림 1 〈민족유산보호법〉으로 확인되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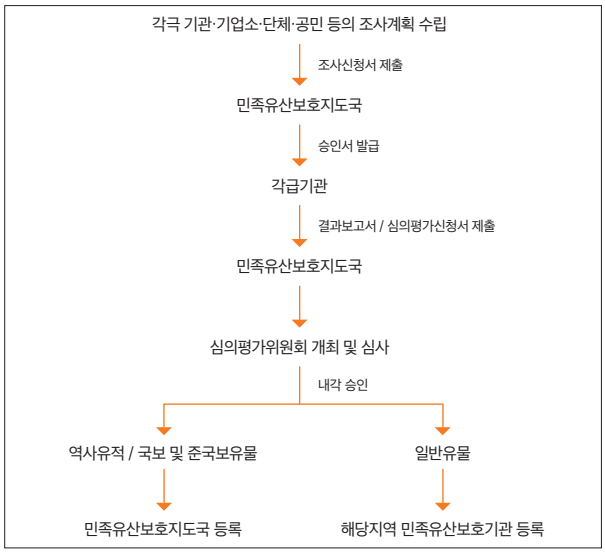


그림 2 물질유산의 발굴조사 및 등록절차.

28 장경희, 2010, 『북한의 박물관』, 예맥, p.20.

29 최종택·성춘택, 2018, 「남북 문화유산 조사 현황과 공동조사를 위한 제언」『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2018년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pp.76~77.
하문식, 2007, 앞의 글, pp.283~287.

30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 고구려 벽화무덤 발굴(조선중앙통신 2018.4.25).

31 개성시 선적리 고려 숙종 무덤 발굴(조선중앙통신 2017.8.19).

32 남포시 온천군 원읍지구 고구려 소금 생산 유적 발굴(조선중앙통신 2017.2.17).

33 김범철, 2018, 「북한지역 SOC사업 구상과 문화유산 : 북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제언」『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2018년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pp.54~55.
심광주, 2018, 「개성공단 건설부지 내 문화유산 공동조사의 성과와 과제」『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2018년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p.41.

표 3 북한의 유적관리소[34] 및 역사박물관[35] 목록

연번	유적관리소	연번	역사박물관
1	단군릉유적관리소	1	조선중앙력사박물관
2	개성시왕건왕릉문화유적관리소	2	향산력사박물관
3	동명왕릉문화유적관리소	3	청진력사박물관
4	자강도문화유적관리소	4	함흥력사박물관
5	평안남도명승지및문화유적관리소	5	신의주력사박물관
6	평안북도명승지및문화유적관리소	6	사리원력사박물관
7	평양시문화유적관리소	7	해주력사박물관
8	함경북도명승지및문화유적관리소	8	고려박물관
9	함경북도문화유적관리소	9	원산력사박물관
10	황해북도명승지및문화유적관리소	10	강계력사박물관
		11	평성력사박물관

출토 유물의 심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심의 평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평가에 따라 유적과 유물의 등급이 부여되며, 이러한 심사 결과는 내각의 승인을 받은 뒤, 역사유적과 국보·준국보유물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등록하고, 일반유물은 해당 지역의 '민족유산보호기관'에서 등록하여 관리한다. 모든 문화유산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지정하는 해당 지역의 '민족유산보호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중앙기관에 등록된 문화유산이더라도 대체로 유물은 각 지역의 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유적은 유적관리소에서 관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역 내 시설물은 철수되거나 또는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유적보호구역'의 지정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의 협의 이후 내각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민족유산보호위원회'는 문화성뿐만 아니라 각급 인민위원회에도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각 지방 단위 인민위원회 산하에 중앙기관과 유사한 문화유산 관리 조직이 편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족유산보호법>을 통해 각급 인민위원회 산하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민족유산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 문화유산 관리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과 단체가 문화유산 관리를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각 시·도의 문화유산 관리 조직은 문화유산을 각급 단체와 조직에 분담하고 이를 관리하였을 것이다.

Ⅳ.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 :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

북한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큰 틀에서의 문화유산 관리 기조와 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은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리 현장에서의 적용 양상을 함께 파악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제32조의 금지 행위 및 제61조의 행정적 책임 조항의 준수 및 처벌 여부에서부터 제17조 건설 과정에서 확인된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의무, 제55조 민족유산 보호를 위한 예산 보장 등이 문화유산 관리 현장과 말단 관리 조직에서 어떻게 준수 및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내용이 모호하거나 구체적 시행 양상을 알기 어려운 조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28조 민족유산 관리 분담 조항을 통해 각급 단체에게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 관리를 분담시키고 그러한 단체들이 문화유산 관

34 통일부, 2018, 앞의 책, pp.91~94.

35 장경희, 2010, 앞의 책, p.10.

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는 여러 부문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이다. 법령에서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 '민족유산보호기관' 등의 중앙 조직의 명칭만이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 내부 조직, 인력, 업무 분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유물과 유적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의 관리 조직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법령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제 문화유산 관리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탈북 인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의 문화유산 관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 인사로 한정하여 섭외를 시도하였으며, 다방면으로 수소문한 끝에 1명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부르기로 한다.

'김철수'는 2015년경부터 압록강 근처 △△도 □□지역에서 약 2년 정도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였다.[36] 역사유적감독원은 □□지역 내에 소재하는 역사유적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해당 지역에는 관리 대상 역사유적이 많지 않아서 그는 2개의 역사유적을 담당하였다.

1. 조직 편제 및 관리·감독(그림 3)

□□지역 역사유적감독원은 □□인민위원회 소속이다. 부서장 없이 책임부원과 감독원만으로 구성되었는데, 근무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책임부원 1인, 감독원 4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원래 정원은 7인이었다고 한다. □□인민위원회 소속이나 역사유적 관리 업무는 △△도역사유적관리소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매년 12월 말 △△도역사유적관리소 소속 역사유적감독원이 모여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업무 및 사업 보고가 이루어진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도내 역사유적감독원은 총 120명 정도, △△도역사유적관리소 내에는 50여명이 근무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연 1회 평양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소속 책임부원이 내려와 역사유적 관리 상황을 실사하였다.

법령상의 각급 인민위원회 소속 민족유산보호위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비상설기구임에 따라 지방의 말단에 있는 인민위원회에서는 유명무실한 편제로 남아 있었거나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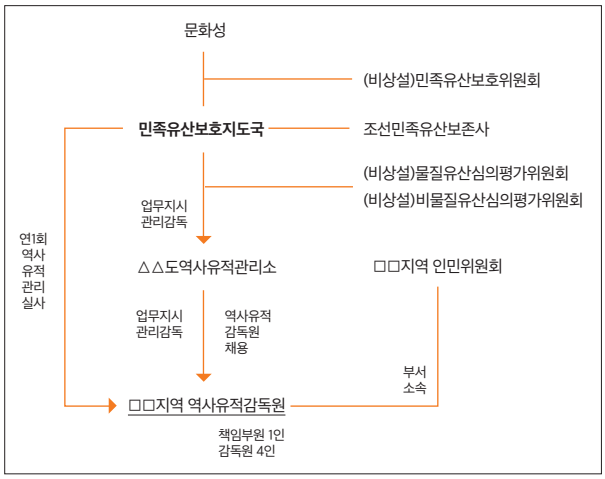


그림 3 △△도 □□지역 역사유적감독원의 편제.

2. 채용 및 교육

'김철수'는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이 폐쇄됨에 따라 지인의 소개로 역사유적감독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채용 절차는 이원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도역사유적관리소의 채용 허가를 받는 한편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역사유적감독원으로 행정적(籍)을 옮기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는 △△도역사유적관리소에서는 쉽게 발령을 받았지만, 인민위원회에서 행정적의 이전을 위해 약간의

36 남한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고자 인명, 지명, 유적명 등은 익명 처리하였다.

뇌물을 사용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지역 인민위원회의 책임부원과 역사유적감독원의 관계 또한 이러한 채용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책임부원은 인민위원회에서 채용하지만, 역사유적감독원은 도역사유적관리소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뿐만 아니라 유적 관리 실무는 주로 도역사유적관리소에서 관리·감독하였다. 책임부원은 유적 관리 업무를 잘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채용 과정이 일반적인지는 알 수 없다.

역사유적감독원은 전문 학위나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기억으로는 △△도역사유적관리소의 책임부원급 직원 정도만 관련 학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령 이후에도 문화유산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직무교육은 없었다. 책임부원으로부터 담당 유적에 대한 안내를 받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3. 업무

역사유적감독원은 일종의 외근직으로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역사유적에 방문하여 유적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잡초 제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사유적은 대체로 지역의 외곽에 위치하였고, 책임부원이나 △△도역사유적관리소에서도 업무 지시가 잦거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 담당 유적에 방문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다. 인민위원회 소속의 책임부원의 지시는 유적 관리에 대한 것보다는 당 생활과 관련된 생활총화, 정치강연 참석 등에 대한 지시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역사유적에 관람객이 방문한 경우에 역사유적감독원이 안내와 설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철수'가 담당한 유적에 관람객이 방문한 적은 없었고 □□지역의 역사유적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인근 혁명사적관리소의 안내원이 혁명 사적 답사 과정에서 역사유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적 관리만 했던 것은 아니며, 주 1~2회 정도는 주변 철길 보수 작업이나 도로 닦기 작업에 계속 동원되었다.

그가 근무 당시에 가장 긴급하게 처리했던 것은 담당 유적 중 한 곳의 표식비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이를 복구하는 일이었다. 표식비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훼손된 것이 발각되면 큰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해당 건을 보안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동료 역사유적감독원끼리 긴급히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다.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던 중 △△도역사유적관리소에서 □□지역 민속공원 건설사업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 전까지 매일 현장으로 출근하였다. 당시 평양 민속공원을 본따 각 지역마다 민속공원이 건설되었는데 □□지역도 건설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다. □□지역 역사유적감독원 및 △△도역사유적관리소 직원 전체가 동원되었다. 자재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공사는 자주 중단되었다.

4. 시설, 장비, 예산

□□지역 역사유적감독원들은 인민위원회 건물 내에 사무실과 같은 사무공간을 할당받지 못하였고 역사유적 관리를 위한 장비 또한 전무한 실정이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도 내려오지 않았으며, 예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역사유적감독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1500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적 관리 분야의 열악한 예산 상황은 표식비 복구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김철수'는 복구에 필요한 자재를 전부 본인이 자비로 장마당에서 구매하여 조달하였다고 밝혔다. 말단 조직뿐만 아니라 도 단위 조직도 예산이 열악했던 점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 단위에서 진행한 민속공원 조성공사도 자재 부족으로 빈번하게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민족유산 보호를 위한 노동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는 제55조

민족유산보호사업의 조건 보장 조항은 유명무실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5. 기타

한편 표식비 복구 과정에서 그는 해당 역사유적 인근에 위치한 후원기관인 중학교에서 인력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주로 자재를 유적까지 옮기는 데 중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이 후원기관은 자원했다기보다는 <민족유산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민족유산 관리 분담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유의 담당 업무가 있는 사업소나 기업보다는 각급 학교를 관리 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력을 조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역은 관리 대상 유적이 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개발이 미미한 편이기에 제32조 역사유적보호구역의 금지 행위, 제61조 행정적 책임에 근거하여 위법 행위를 적발하거나 제재한 경험이 없었다. 또한 그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문화유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발굴조사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Ⅴ. 결론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법령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의 관리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지만, 법령만으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 및 준수되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서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였던 탈북 인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 인력, 업무, 예산 등을 법령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방의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나 업무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내용이 모호했던 일부 조항의 시행 양상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 문화유산의 열악한 관리 환경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문화유산 관리 실태를 전하는 문서나 증언이 드물다는 점에서 본 사례 연구는 남한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용은 역사유적감독원이라는 지방의 말단 관리자의 증언에 기반한 특정 지역의 유적 관리 사례에 불과하기에 이를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역과 직책의 한계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었으며, 기억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2000년대 초의 강원도 관리 인원 17명과[37] 2016년 △△도 관리 인원 약 120명의 차이가 북한 당국의 인원 확충에 의한 것인지 지역적 차이인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사례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북한 내 다양한 지역 및 종류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를 축적하여 여러 층위의 정보를 종합 및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37 권오국, 2006, 앞의 글, p.86.

* 본 논문은 201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이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남북문화유산 교류사』
- 권오국, 2005,「탈북 인사 대담 98 : 북한의 민속박물관」『통일한국』264, 평화문제연구소
- 권오국, 2006,「탈북 인사 대담 110 : 북한의 문화재 실태」『통일한국』276, 평화문제연구소
- 권혁희, 2019,「북한의 비물질 문화유산 정책의 변화와 특성」『통일정책연구』28(1), 통일연구원
- 김범철, 2018,「북한지역 SOC사업 구상과 문화유산 : 북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제언」『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2018년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 김용범·김응환·전영선·이승수, 1995,『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 문화체육부
- 김유진, 2018,「II.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이해」『남북문화유산 교류사』, 국립문화재연구소, pp.26~27
- 김응환·전영선, 1997,「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 :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민족학연구』2, 한국민족학회
- 김이협, 1974,「북한 유형문화재 지정의 제문제」『북한』27, 북한연구소
- 김준혁, 2002,「북한의 문화유산 인식과 정책」『민족발전연구』6,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 남궁승태, 2003,「북한 문화유물보호법에 관한 고찰」『대불대학교 연구논문집』2
- 남보라·서순복, 2014,「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 분석」『법학논총』21(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대남, 2011,「북한의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및 현황 고찰」『인문과학연구』16,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대남, 2013,「북한의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월간북한』500, 북한연구소
- 박상천, 1994,「북한의 민족문화유산 계승 정책에 대한 고찰」『북한학보』18
- 박상철·김창규, 1995,『북한의 문화재 보호 관계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 박성진, 2013,「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현대북한연구』16(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 송민선, 2017,「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교류 협력 방안 연구」『문화재』50(2), 국립문화재연구소
- 심광주, 2018,「개성공단 건설부지 내 문화유산 공동조사의 성과와 과제」『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2018년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 오양열, 2003,「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북한연구』6,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 이규창, 2010,「북한 문화재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북한 문화유물보호법과 남한 문화재보호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I)』, 법제처
- 이기성, 2015,「북한 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 학사적 검토를 중심으로」『고고학』14(3)
- 이호관, 1995,「북한의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가?」『월간 문화예술』19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임상택, 2015,「북한의 궁산문화 연구 과정과 편년 논리」『고고학』14(3)
- 장경희, 2010,『북한의 박물관』, 예맥
- 장호수, 2000,『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 관리』, 백산자료원
- 전영선, 2006,「북한의 민족문화정책과 민속문화」『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아카데미
- 전영선·신준영, 2016,『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 협력』, 통일부 통일교육원
- 정은찬·문철훈, 2017,「남북 문화유산의 교류 협력 현황과 과제 : 문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3(1),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정재훈, 1989,「남북한 문화재 관리정책의 비교」『미술사학』3

참고문헌

- 정창현, 2012,「북한의 문화유산정책과 관리 체계」『통일인문학』5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정창현, 2019,「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 교류」『통일인문학』77,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지병목, 2003,「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문화재』36, 국립문화재연구소
- 최종고, 1998,「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 :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북한법연구』1, 북한법연구회
- 최종택·성춘택, 2018,「남북 문화유산 조사 현황과 공동조사를 위한 제언」『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2018년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 특별위원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 통일부, 2018,『2019 북한 기관별 인명록』
- 하문식, 2007,「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정신문화연구』30(1), 한국학중앙연구원
- 하문식, 2018,「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 : 매장문화재」『선사와 고대』57
- 한창균, 2013,「북한 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한국상고사학보』79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 December 2019, pp.4~17.*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search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North Korea

- an example of the management of provincial sites -

Hyunwoo Kim* Ph.D. candidate,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nbok Yi Professor,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akhw01@snu.ac.kr

Abstract

Both as a means of improving North-South relations, as well as a necessary component for carrying out research on the p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est in North Korean cultural resources has been growing in South Korean society. As a result, studies have begun to look beyond North Korean cultural resources themselves and attempt to determine how cultural resources are managed in North Korea. Such studies have tended to investigate law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but information gleaned from laws alone is limited. To provide a more complete picture, research must also investigate how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laws are applied and enforced an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aspects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that are not directed or regulated by law.

In this study, we refer to the current National Cultural Resources Protection Laws in order to investigate systems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orth Korea. Furthermore,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a former North Korean national who had until recently worked as a director of historical sites in North Korea. Through comparisons of information relating to organization, labor power, responsibilities, budget, and other factors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gained through the interviews and the 'National Cultural Resources Protection Laws,' we hoped to gain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orth Korea.

As a result, we were able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 and tasks related to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clarify some of the provisions that were unclear in the laws. Throughout the process, we were also able to determine that the management of cultural resources in North Korea is currently inadequate. However, because this study focuses on a specific region and is limited only to historical site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our findings to the entirety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orth Korea. In order to gain an objective and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orth Korea, information must be collected at many levels to be synthesized and compared.

Keywords North Korea,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Law, Historical Site Official, Interview

Received 2019. 06. 28 • **Revised** 2019. 07. 22 • **Accepted** 2019. 10. 2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